

중국의 온라인중재 운용과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 CIETAC의 온라인중재를 중심으로

Practices and Legal Issues of Online Arbitration in China
- focused on Online Arbitration of CIETAC

차 경 자*

Kyung-Ja Cha

최 성 일**

Sung-Il Choi

〈목 차〉

- I. 서 론
- II. 중국의 온라인중재 현황
- III. 중국 CIETAC의 온라인중재 운용현황
- IV. 중국의 온라인중재 운용에 관한 법적이슈
- V. 결론

주제어: 온라인중재, 중국, CIETAC, 온라인중재규칙

* 주 저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I. 서론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많은 일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단순한 정보교환부터 복잡한 주문과 결제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상거래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기업과 공공기관들도 온라인 공간 속에 가상의 공간을 보유하여 현실세계의 업무를 대부분 구현하고 있다.

이는 분쟁해결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전통적인 분쟁해결은 법원을 통한 소송과 그 외 중재와 조정 등으로 대변되는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송의 경우, 한국의 법원에서도 특허소송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 인터넷등기소를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부동산과 법인등기의 열람 및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부 업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¹⁾ 상사분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재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온라인중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온라인중재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절차가 간단하고 법적강제력이 없는 조정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²⁾ 이에 비해 법적강제력을 가지는 소송과 중재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이용해야 하는데서 제기되는 보안문제에 대한 부담감과, 기존의 법률규정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새로운 법적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온라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온라인 상거래에서 야기되는 법적문제들에 대한 입법화가 진행되면서 일부 국가의 중재기관에서는 온라인중재규칙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온라인중재를 시행하고 있다. 그 중 중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2009년 5월에 '온라인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광저우(廣州)중재위원회도 2007년부터 '공익사업 요금분쟁에 대한 중재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의 온라인중재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우광명(2006)은 중국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를 도메인네임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 있으나, 2009년 제정된 '온라인중재규칙'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³⁾ 온라인중재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온라인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문제해결과 방안제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분야의 온라인중재 활성화를 위해 북미지역의 온라인중재현황을 소개하고 실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 것,⁴⁾ 사이버무역에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ecfs.scourt.go.kr/ecf/ecf400/ECF420.jsp>,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http://www.iros.go.kr/PMainJ.jsp> 참고.(최종방문일:2010/05/30)

2) 한국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진흥원의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 등이 조정신청, 접수, 심리에서 조정결정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3) 우광명, "중국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실행과 법적 문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6권 제2호, 2006.

서 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온라인분쟁해결 서비스기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온라인 중재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분석한 것,⁵⁾ 향후 온라인중재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문제를 논하거나,⁶⁾ 온라인 ADR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활성화방안을 제시한 것 등이 있다.⁷⁾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도 중국의 온라인중재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온라인중재 현황과 그 시행에 따르는 법적이슈를 연구하여, 중국의 중재제도 연구자들에게 최신동향을 제공하고, 온라인중재제도 연구자들에게는 중국의 온라인중재사례를 제공하여 후속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국내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온라인중재규칙을 소개하고 이에 의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관련 규정의 제정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선행연구가 진행된 온라인 중재의 특성 및 필요성 등은 생략하고, 중국의 온라인중재제도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 중국의 온라인중재 현황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재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중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국가이다. 2000년에 중국의 160개 중재기관이 처리한 중재사건은 9,577건에 불과했지만, 2009년 한 해 동안 202개의 중재기관이 74,811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⁸⁾ 그러나 현재까지 온라인중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CIETAC과 광저우중재위원회 2곳에 불과하다. CIETAC의 경우, 2009년 본격적인 온라인중재를 도입한 후 사건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광저우중재위원회 역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9건의 중재사건에 대한 사건일지와 판정문만을 게시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그러나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2007년 EU와 공동으로 온라인중재를 주제로 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⁹⁾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온라인 중재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온라인중재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장에서는 중국의 온라인중재에 대한 정의와 실제 온라인중재를 시행하는 중재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4) 유병욱, “온라인분쟁해결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온라인중재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19권, 2003.

5) 오원석·유병욱, “사이버무역에서 중재의 역할과 온라인중재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제14권 제1호, 2004.

6) 우광명, “온라인 중재의 실행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제5권 제1호, 2003.

7) 최석범, “온라인 ADR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제18권 제3호, 2008.

8) 중재건수로 보면 우한(武漢)중재위원회가 9,7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쟁대상 금액으로 보면 CIETAC이 1,482건, 172억 위안으로 가장 많았다. 2009년 기준으로 미국의 AAA의 중재 건수가 836건, ICC중재법원이 817건, 런던국제중재법원이 232건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中國仲裁網: <http://www.china-arbitration.com/news.php?id=1771> 참고. (최중방문일:2010/05/30)

9) 이 프로젝트의 성과와 내용은 ‘盧雲華, 『在線仲裁研究(中國歐盟信息社會項目)』, 法律出版社, 2008’ 참고.

1. 중국 온라인중재의 정의

온라인중재를 정의하기 전에 먼저 온라인중재가 과연 전통적인 중재와 별개인 새로운 개념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전통적인 중재와 유사한 개념이라면 기존의 중재에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를 적용해야 하고, 다른 개념이라면 그에 맞는 새로운 규정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중재가 완전히 새로운 분쟁해결방식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중재절차의 운영 메커니즘과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중재의 운영 메커니즘과 원리가 일반적인 중재와 같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새로운 중재절차의 하나로 봐야 한다. 만약 전통적인 중재와 다르다면, 이는 새로운 분쟁해결방식으로 간주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은 온라인중재를 전통적 중재와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여기지 않는다. 온라인중재는 전통적인 중재와 비교해볼 때 새로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전달의 매개체와 방식이 다를 뿐이며, 이는 새로운 분쟁해결방식이라기 보다는 전통적 중재를 모태로 파생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¹⁰⁾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말하는 온라인중재는 당사자들이 제3자인 중재원에게 위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방식을 사용하는 일종의 중재절차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중재는 인터넷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중재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재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의 여부 또한 전통적인 중재와의 차이점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중재의 최종목적은 인터넷 IT와 통신기술을 충분히 이용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재기관, 중재원과 당사자 간의 정보를 처리하고 교환하고 중재문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과 통지 등 현행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적인 서면방식의 정보처리와 교환을 전자적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종이 없는 중재(無紙仲裁)'를 실현하는 것이다.¹¹⁾

2. 중국의 온라인중재기관

북미와 유럽의 온라인중재는 대부분 온라인중재 서비스제공자의 독자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된다.¹²⁾ 중국에서도 일부 기관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중국 최초의 온라인분쟁해결 서비스제공자(ODR Provider)는 '중국온라인분쟁해결센터(中國在線爭議

10) 周雪利, "網上仲裁若干法律問題之探討", 「甘肅政法成人教育學院學報」總第70期, 2008, p.18; 朱瑋瓊, "網上仲裁若干法律問題研究", 「法學研究」第6期, 2009, p.40; 馬遷, "網上仲裁的法律問題研究", 「河南社會科學」第17卷 第2期, 2009, p.108; 李娟, "試論網上仲裁的法律問題", 「仲裁研究」第15輯, 2008, p.50;

11) 吳清吳, "論在線仲裁", 「北京仲裁」第61輯, 2007, p.70.

12) 이에 관한 내용은 최석범(2008)과 유병욱(2003), pp.203-209를 참고할 것.

解決中心)이다. 이는 2004년 6월, 중국의 '電子商去來法律網'과 '北京德法智誠諮詢公司'가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CHINAODR'이라는 온라인 정보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¹³⁾ 설립당시에는 온라인 조정과 온라인알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온라인중재까지 진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4년 이후 이용실적은 거의 없다. 중국에서는 독자적인 온라인중재 서비스제공자 모델이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대신, 중국은 미국의 AAA 모델을 적용하여¹⁴⁾ 기존의 중재기관의 홈페이지를 매개로한 온라인중재를 시행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다. 최초의 시도는 CIETAC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 12월 CIETAC은 도메인네임분쟁해결센터(DNDRC)를 설립하여 도메인네임분쟁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오고 있다. 온라인분쟁해결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자 2009년 5월 CIETAC은 '온라인중재규칙'을 제정하고, 그 대상을 상사분쟁으로 확대시켰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다루고 있다.

광저우중재위원회는 2009년 한 해 동안 4,345건을 처리할 정도로 중재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곳이며,¹⁵⁾ 2007년에 '공익사업 요금분쟁에 대한 온라인중재규칙(公用事業收費糾紛網上仲裁規則)'을 제정하고 '공익사업 요금분쟁'¹⁶⁾을 대상으로 온라인중재를 시행하고 있다. 광저우중재위원회는 상기 규칙에 의거하여 인터넷에 '中國商事仲裁網'을 개설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¹⁷⁾ 본 연구는 CIETAC의 온라인중재를 다루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III. 중국 CIETAC의 온라인중재 운용현황

1956년 설립된 CIETAC은 중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 온라인분쟁해결을 가장 먼저 시도한 곳이다. CIETAC은 2000년 12월 '도메인네임분쟁해결센터'(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er: DNDRC)를 설립한 이래 온라인으로 도메인네임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설립이후 2009년까지 총 1,067건의 도메인네임분쟁을 처리하였는데,¹⁸⁾ 이로 인해 CIETAC

13) 자세한 내용은 中國在線爭議解決中心 <http://www.odr.com.cn> 참고할 것.(최종방문일:2010/05/30)

14) 미국의 AAA은 자체적으로 온라인중재규칙을 제정하고 홈페이지 상에서 일부 중재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중재협회(AAA) <http://www.adr.org> 참고.(최종방문일:2010/05/30)

15) 中國仲裁網: <http://www.china-arbitration.com/news.php?id=1743> 참고. (최종방문일:2010/05/30)

16) 여기서 '공익사업 요금분쟁'이란,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과 수도, 전기, 가스, 공공교통, 통신·통신 등 공익분야 간에 공익사업 서비스계약으로 인해 야기된 요금분쟁을 말한다('공익사업 요금분쟁에 대한 온라인 중재규칙' 제2조).

17) 中國商事仲裁網 <http://www.ccarb.org> 참고.(최종방문일:2010/05/30)

18) CIETAC의 각 년도 업무보고에서 정리. <http://cn.cietac.org/>의 '工作報告' 참고.(최종방문일:2010/05/30)

은 온라인분쟁해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는 ‘온라인중재규칙’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DNDRC의 분쟁해결절차를 법적구속력을 지닌 온라인중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절차가 현재 중국이 정의하는 온라인중재의 운용체제와 일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DNDRC의 분쟁해결방식을 온라인중재라고 표현하고 있다.¹⁹⁾ ‘온라인중재규칙’도 DNDRC 분쟁해결규칙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그 범위를 상사분쟁으로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DNDRC의 분쟁해결절차는 중국 온라인중재의 모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온라인중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DNDRC 분쟁해결절차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DNDRC 분쟁해결제도의 운용현황을 분석한 후, ‘온라인중재규칙’의 시행을 담당하는 CIETAC의 또 다른 기관인 ‘온라인분쟁해결센터(Online Dispute Resolution Center: OD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CIETAC의 도메인네임분쟁해결센터(DNDRC)

(1) DNDRC 분쟁해결의 성격

DNDRC는 CIETAC의 산하기구로서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위탁으로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는 인터넷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인터넷주소관리, 인터넷침해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한국의 도메인네임 분쟁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정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중국의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절차는 중재기관인 CIETAC의 산하기구 DNDRC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중재절차로 여겨지고 있다.²⁰⁾

DNDRC 분쟁해결절차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는 일종의 중재절차이다. 도메인네임분쟁해결은 중립적인 제3자인 패널(1인 또는 3인으로 구성)이 독립적으로 판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²¹⁾ 조정과는 다르며 중재절차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는 일종의 강제적인 행정중재절차이다. 도메인네임분쟁해결은 도메인네임관리기관인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관리체계의 일부분으로서 등록서비스기관을 통해 모든 도메인네임 등록인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중재절차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²²⁾ 특히 판정결과가 ‘도메인네임 이전’, ‘도메인네임 말소’ 등 ‘중국인터넷정보센터’의

19) 朱瑋瑋(2009), p.40; 馬遷(2009), p.100.

20) 2000년 12월 DNDRC설립 당시, 언론에서 도메인네임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http://www.china-arbitration.com/news.php?id=859> (최종방문일:2010/05/30)

21)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도메인네임분쟁해결방법(域名爭議解決辦法)’ 제4조.

22)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도메인네임등록실시세칙(域名注冊實施細則)’ 제7조에 의거하여 도메인네임신청자는 도메인네임 등록기관의 약관에 따라 DNDRC의 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관리 범위 내에 있다면 분쟁 당사자들과 등록서비스기관에 모두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서비스기관이 직접 판정의 내용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²³⁾ 그러나 기타 행정중재절차와 마찬가지로, 도메인네임분쟁의 판정문은 일반적인 중재판정과는 다르게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집행력이 없다. 즉, 패소자가 판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없고, 판정에 불만을 가지는 당사자가 같은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²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도메인분쟁해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중재절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는 일종의 온라인중재절차이다. 도메인네임분쟁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사건의 절차는 주로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전자식 통신방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DNDRC의 분쟁해결절차는 해결방식면에서 중재절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절차와 분쟁관할을 기준으로 보면 일종의 강제성을 지닌 행정중재절차라고 볼 수 있다. 판정의 효력 면에서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중재절차이며, 절차진행의 방식에서 보면 온라인중재절차라고 볼 수 있다.

(2) DNDRC 분쟁해결절차

DNDRC 분쟁해결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온라인 사건관리시스템과 편리하고 신속한 온라인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CIETAC는 DNDRC를 설립한 후에 'http://dndrc.cietac.org'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이를 통해 분쟁해결절차의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DNDRC의 분쟁해결규칙에 의한 절차와 사례에 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가 있으므로,²⁵⁾ 여기에서는 온라인을 이용한 운용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별로 정리하고자 한다.²⁶⁾

자신의 도메인네임에 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는 DNDR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정보보호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뜨고 이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는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으면 신청인은 언제라도 DNDRC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건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사건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다. 피신청인 역시 같은 방법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열람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고 판정문을 열람할 수

23)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도메인네임분쟁해결방법(域名爭議解決辦法)' 제16조.

24)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도메인네임분쟁해결방법(域名爭議解決辦法)' 제15조.

25) 차경자, "중국의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제도-CIETAC의 DNDRC 조정을 중심으로", 「국제상학」제23권 제4호, 2008, pp.179-188 참고.

26) 아래의 절차는 'http://dndrc.cietac.org'의 로그인 화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사용자안내(網絡用戶指南)'와 '2008년도 중국중재업무 연차회의(2008年中國仲裁工作年會)'에서 CIETAC이 발표한 '在線仲裁理論研究與實踐'에서 정리함. http://www.ccarb.org/news_detail.php?VID=10624 참고.(최종방문일:2010/05/30)

있다.

DNDRC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무국은 사건관리인을 지정한다. 사건관리인은 시스템 상에 사건전용 폴더를 생성한 후 신청인에게 사건접수 확인서를 보낸다. ‘도메인네임분쟁해결절차규칙’의 규정에 따라 증재절차 개시, 수신확인, 심리일정 통지, 패널 구성통지, 판정문 발송 및 게시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사건관리인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여 양방 당사자에게 절차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시스템에서는 자동적으로 사건일지를 생성하고 사건절차를 자동적으로 기록하며 모든 사건자료와 통지 내역을 자동으로 백업한다. 시스템은 다음 절차가 행해지는 일시와 사건절차의 진행현황 등 사건관리인이 관리하는 사건에 대해 자동으로 분류작업을 하도록 설계 되어있다. 시스템은 각 패널별로 참여한 사건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작성하여 향후 패널지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사건관리인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사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건절차를 관리하는데, 오직 자신이 관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열람권을 가진다. 그러나 ‘특급 사건관리인(사무국장과 부국장)’은 모든 사건에 대해 열람권을 가지고 있으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하고 사건관리인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패널이 결정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사건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고 온라인으로 판정문을 작성한다. 패널이 판정문을 DNDRC 사무국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사무국장과 사건관리인이 판정문에 대해 심의한다. 심의절차를 거친 후 판정문은 패널의 최종확인을 거친 후 양방 당사자에게 발송되고, DNDRC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다.

2. CIETAC의 온라인분쟁해결센터(ODRC)

(1) ODRC의 지위 및 역할

ODRC는 2005년 7월에 설립된 CIETAC의 산하기구이며,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DNDRC와 1기구 2센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²⁷⁾ 즉, 2000년 12월 DNDRC가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을 위해 설립된 후, 그 외의 인터넷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CIETAC이 2005년에 또 하나의 센터를 설립한 것인데, 기존의 조직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센터이름만 하나 더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²⁸⁾ 두 가지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의 대부분을 도메인네임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쌓아온 인

27) 중국에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많다. 예를 들어 CIETAC의 경우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중재원’이라는 명칭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28) 이러한 센터의 설립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2조 제9항인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 업종의 중재센터를 설치하고, 업종 중재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에 의거한 것이다.

지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 발생하게 될 다양한 온라인분쟁해결의 거점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ODRC는 도메인네임분쟁 이외의 인터넷관련 지식재산권 분쟁과 전자상거래분쟁을 온라인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도메인 키워드서비스²⁹⁾ 무선인터넷주소,³⁰⁾ 문자메시지서비스(SMS)와³¹⁾ 인터넷 정보제공서비스에 관한 분쟁을³²⁾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등록서비스기관의 약관에 의해 반드시 ODRC를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정도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앞에서 언급한 DNDRC의 온라인 분쟁해결절차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ODRC가 이들 분야에서 해결한 분쟁 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2000년부터 2009년 말까지 DNDRC에서 처리한 도메인네임분쟁은 1,332건이었지만, ODRC에서 처리한 분쟁은 도메인 키워드서비스분쟁 63건, 무선인터넷주소분쟁 13건, SMS분쟁 10건에 불과했다.³³⁾

그러나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CIETAC은 2009년에 ‘온라인중재규칙’을 제정하고, 온라인중재에 관한 모든 절차를 ODRC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ODRC는 기존의 인터넷관련 분쟁해결센터에서 중국 최초로 상사분쟁에 대한 온라인중재를 시행하는 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시행 된 지 이제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ODRC에서 개설하기로 한 인터넷사이트(www.cietacodr.org)는 아직까지 접속이 안 되고, CIETAC 홈페이지 상의 온라인중재 신청매뉴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충분한 기술적 준비 없이 규칙부터 제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중재규칙’의 시행은 중국 중재제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상사분쟁을 온라인으로 중재하는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들기 때문에 CIETAC의 시도는 온라인중재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온라인중재규칙’에 의거하여 ODRC 온라인중재의 절차와 주요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29) 도메인 키워드(Domain Keyword)는 인터넷 키워드(Internet Keyword)라고도 불리 우며, 영문으로 표현되는 도메인네임 대신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키워드를 입력하여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도메인 키워드서비스는 CNNIC의 위임을 받아 2002년 1월부터 ‘도메인 키워드 서비스 분쟁해결 방법(通用網址爭議解決辦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다.

30) 무선인터넷주소에 관한 분쟁은 CNNIC의 위임을 받아 ‘무선인터넷주소분쟁해결방법(無線網址爭議解決辦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다. 중국의 무선인터넷서비스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2006년 3월, CIETAC은 무선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구로서 CNNIC의 위임을 받았다. 이후 CIETAC은 1여 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 5월 18일부터 무선인터넷주소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31) 문자메시지서비스에 관한 분쟁은 2005년부터 ‘중국이동통신연합회(中國移動通信聯合會)’의 위임을 받아 ‘문자메시지 분쟁해결방법(短信網址爭議解決辦法)’에 의거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

32) 인터넷정보제공서비스에 관한 분쟁은 2008년부터 정보산업부(信息產業部)의 위임을 받아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 분쟁해결방법(信息名址爭議解決辦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다.

33) CIETAC의 각 년도 업무보고에서 정리. <http://cn.cietac.org>의 ‘工作報告’ 참고.(최종방문일:2010/05/30)

(2) ODRC 온라인중재의 절차와 주요내용

1) 온라인중재의 진행과정

온라인중재의 절차는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진행과정을 의미하며, 중재절차는 ODRC가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시작된다.³⁴⁾ 또한 모든 절차의 진행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중재규칙’은 분쟁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절차, 간이절차(簡易程序)와 신속절차(快速程序) 등 세 가지종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일반절차의 경우, 중재신청 후 5일 이내에 접수통지를 하고, 피신청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혹은 반대신청을 해야 한다. 반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자는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통지 후 6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판정부 구성되면 4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³⁵⁾ 둘째, 간이절차는 분쟁금액이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사건이거나, 100만 위안 이상이라도 양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할 때 적용할 수 있다.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15일 이내이고,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은 10일 이내이며,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³⁶⁾ 셋째, 신속절차는 분쟁금액이 10만 위안 이하이거나, 10만 위안 이상이라도 양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할 때 적용한다.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10일 이내이고,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은 5일 이내이며,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³⁷⁾ 간이 및 신속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면형식의 동의는 유형적으로 내용을 표현하고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한 정보기록 형식을 말하며, 전자식 문서도 포함하고 있다.³⁸⁾

2) 온라인중재의 신청

ODRC의 온라인중재는 ‘중재합의가 명시되어 있는 계약 혹은 비계약상의 경제무역에 관련된 상사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³⁹⁾ 이는 CIETAC의 중재규칙의 대상과 동일하

34) ‘온라인중재규칙’ 제17조.

35) ‘온라인중재규칙’ 제19조, 21조, 23조, 27조, 제38조. 이를 오프라인 중재규칙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CIETAC 중재규칙’에는 접수통지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과 반대신청 기한은 45일 이내이며, 반대신청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 기한은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3조).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서도 접수통지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대신 피신청인의 답변기한은 국내중재인 경우에는 15일, 국제중재인 경우에는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36) ‘온라인중재규칙’ 제41조-45조. ‘CIETAC 중재규칙’에서도 간이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쟁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50만 위안을 초과하지만 당사자 간의 서면동의가 있을 때 적용한다. 답변서와 반대신청 제출기한은 20일 이내다(제50조, 제53조). 한국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도 이와 유사한 신속절차가 있는데,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고, 1억 원 이하의 국내중재에 적용하고 심리종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6조, 제59조).

37) ‘온라인중재규칙’ 제47조-51조.

38) ‘온라인중재규칙’ 제2조 제6항.

다. 즉, 같은 성격의 분쟁이라도 계약서에 어떤 중재조항을 명시하느냐에 따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중재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⁴⁰⁾ 중재신청서는 ODRC가 개설한 사이트인 'www.cietacodr.org'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방식을 기재해야 한다. 연락방식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 혹은 기타 전자식 통신방식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신청인이 가장 선호하는 연락방식,⁴¹⁾ 중재합의, 중재신청 취지, 사건의 내용과 쟁점, 중재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⁴²⁾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도 위와 같다.

ODRC에 제출하는 중재신청, 답변, 진술, 증거 및 기타 중재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자료는 당사자가 반드시 전자우편, 전자데이터교환, 팩스 등의 전자식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⁴³⁾ 이때, 인터넷을 통해 발송한 것은 전자식 문서가 인터넷 시스템에 들어간 시간을, 팩스로 발송한 것은 발송확인서에 표시된 일시를, 등기 혹은 속달로 발송 한 것은 발송내역서 상에 기재된 일시를 당사자가 문서를 수령한 날로 간주한다.⁴⁴⁾ 온라인시스템의 고장 등의 원인으로 수령인 이외의 사람에게 전달되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ODRC는 책임 지지 않는다.⁴⁵⁾

중재신청 시에는 '온라인중재사건 중재비용표(網上仲裁費用表)'의 기준에 따라 중재비용을 예납해야 한다. <표1>에서는 편의상 섭외사건을 기준으로 CIETAC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프라인 중재비용과 비교해 보았다. 온라인중재는 상대적으로 분쟁금액의 기준이 낮고, 구간도 세분화 되어있으며, 전체적으로 중재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39) '온라인중재규칙' 제1조.

40) CIETAC ODRC의 온라인중재 표준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신청 시 유효한 온라인중재규칙에 의거하여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凡當事人之間因本合所發生的或者與其有關的任何爭議,均應當提交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按照申請仲裁時該會現行有效的網上仲裁規則進行仲裁. 仲裁裁決是終局的, 對雙方均有約束”; “Any dispute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for arbitration which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mmission's arbitration rules in effect at the time of applying for arbitration. The arbitral award is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41) 신청인이 선호하는 연락방식의 기재는 CIETAC의 중재규칙에는 없는 새로운 요건이다.

42) '온라인중재규칙' 제18조.

43) '온라인중재규칙' 제10조.

44) '온라인중재규칙' 제13조.

45) '온라인중재규칙' 제16조.

〈표1〉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재비용 비교표

구분	분쟁금액	중재비용
온라인중재 (섭외사건)	10만元 이하	5%, 최저 4,000元
	10만-20만元	5,000元+10만元 초과분의 4.5%
	20만-50만元	9,500元+20만元 초과분의 4%
	50만-100만元	21,500元+50만元 초과분의 3.5%
	100만-500만元	39,000元+100만元 초과분의 2.5%
	500만-1000만元	139,000元+500만元 초과분의 1.5%
	1000만-5000만元	214,000元+1000만元 초과분의 1%
	5000만-1억元	614,000元+5000만元 초과분의 0.4%
	1억元 이상	864,000元+1억元 초과분의 0.4%
CIETAC의 일반중재 (섭외사건)	100만元 이하	3.5%, 최저 1만元
	100만-500만元	35,000元+100만元 초과분의 2.5%
	500만-1000만元	135,000元+500만元 초과분의 1.5%
	1000만元-5000만元	210,000元+1000만元 초과분의 1%
	5000만元 이상	610,000元+5000만元 초과분의 0.5%

자료 : CIETAC의 '網上仲裁費用表'와 '涉外案件仲裁費用表'에서 정리.

3) 온라인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판정부는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3인으로 구성한다. 간이절차 혹은 신속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중재원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CIETAC의 중재원 명부에서 선정한다. 중재원 선정은 가장 늦게 중재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중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일 이내에 협의에 의해 선정하거나 사무국에 위임할 수 있다.⁴⁶⁾ 중재인 선정기한을 오프라인 중재와 비교해보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IETAC 중재규칙'은 중재인 선정기한을 중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의 경우, 국내중재는 15일, 국제중재는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⁴⁷⁾ '온라인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 기피, 중재인 교체, 다수 중재인에 의한 중재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CIETAC의 중재규칙을 적용한다.

46) '온라인중재규칙' 제24-27조.

47) 'CIETAC 중재규칙' 제22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20조 제2항.

4) 온라인중재의 심리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심리의 일시, 장소와 방식을 결정하고,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심리개시 12일전까지 통지한다.⁴⁸⁾ 이는 20일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CIETAC 중재규칙’보다는 짧지만, 10일전으로 규정하고 있는(국제중재는 20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보다는 긴 편이다.⁴⁹⁾ 심리방식은 오프라인 중재와 마찬가지로 구두심리와 서면심리를 선택 혹은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구두심리는 온라인 화상회의 및 기타 전자 혹은 컴퓨터 통신형식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구두심리를 의미하고, 서면심리 역시 전자식 문서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⁵⁰⁾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중재판정부가 일반적인 오프라인 구두심리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⁵¹⁾ 이는 온라인방식만 강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건해결에 가장 효율적인 심리방식을 융통성 있게 선택 혹은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온라인 심리에서는 전자, 광학, 자기 혹은 유사수단으로 생성, 발송, 접수 혹은 보존되어있는 전자적 형식의 증거를 인정하고 있다. 전자적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첫째, 전자적 증거의 생성, 보존 혹은 전달방법의 신뢰성, 둘째, 내용을 완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의 신뢰성, 셋째, 발송을 식별하는 방법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중재판정부가 판단한다. 또한 전자적 형식의 증거가 신뢰할 만한 전자서명을 사용하고 있다면, 수기서명 혹은 날인된 문서와 동등한 효력과 신빙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한다.⁵²⁾

5) 온라인중재의 판정과 집행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는 구성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판정문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판정 일시와 중재지를 명시해야 하며,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가(CIETAC) 날인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초안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중재위원회는 판정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⁵³⁾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된 판정문의 효력은 아직 중국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정문은 기존의 방식대로 서면형식으로 작성해서 날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중재규칙’에서는 판정의 이행과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이 없다. 그러나 본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CIETAC 중재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준용한다.⁵⁴⁾

48) ‘온라인중재규칙’ 제34조.

49) ‘CIETAC 중재규칙’ 제30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27조.

50) ‘온라인중재규칙’ 제32조-제34조.

51) ‘온라인중재규칙’ 제33조.

52) ‘온라인중재규칙’ 제29조.

53) ‘온라인중재규칙’ 제38조-제40조.

이상에서 ODRC의 온라인중재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중국의 온라인중재는 기존의 오프라인중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개념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온라인중재규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절차를 선택 혹은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면적인 온라인화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완충하는 수준에서 제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적합할 듯하다.

IV. 중국의 온라인중재 운용에 관한 법적이슈

온라인중재는 인터넷 및 정보기술의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제한도 받기 때문에 먼저 법률에서 인정받아야 법적 강제력이 발생한다. 중국의 ‘계약법’과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인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온라인중재에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중재의 일부 절차는 ‘중재법’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현행 ‘중재법’은 1994년 제정된 것이어서 현재의 변화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중재관련 실무자와 연구자들은 개정안에 온라인중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아래에서는 중국에서 온라인중재의 법적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주요 법적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1. 온라인중재합의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⁴⁾ 이 때문에 ‘온라인중재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식 중재합의가 ‘중재법’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시 된다. 이에 대해 2006년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중재법 적용문제에 관한 해석(關於適用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若干問題的解釋)’에서 전자식 중재합의도 서면형식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였다. 본 해석에서는 ‘중재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기타 서면형식’으로 작성된 중재합의란, 계약서, 우편물과 데이터로 이루어진 전자문서(전보, 전신, 팩스, 전자데이터교환과 전자우편 포함) 등의 형식으로 작성된 중재청구에 대한 합의라고 명시하고 있다.⁵⁵⁾ 이는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계약서가 이메일교환이나 전자식 문서를 통해 체결되고, 중재합의도 그 속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54) ‘온라인중재규칙’ 제54조.

55) ‘중재법’ 제16조.

56)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중재법 적용문제에 관한 해석’ 제1조.

고 볼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으로 인해 적어도 중국의 법원에서는 온라인 중재합의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국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을 외국의 법원에 집행신청을 할 때 발생한다. 뉴욕협약에서는 ‘서면합의’를 계약서 내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 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합의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⁵⁷⁾ 만약 집행을 신청하는 외국에 온라인 중재합의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 법원이 이 조항을 협의로 해석한다면 전자적 형식으로 존재하는 중재합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비록 온라인 중재합의가 중국에서는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온라인 중재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온라인중재는 중국의 국내중재사건에 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2. 온라인중재지

중재지란 중재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곳이다. 중재의 준거법은 중재발생지 국가의 법이다. 이 때문에 중재지를 선정하는 것은 단순히 중재의 장소만을 정한다기 보다는 그 중재장소에서 적용되는 중재에 관한 법률이나 규칙도 따르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⁵⁸⁾ 더욱 중요한 것은 중재지에 따라 중재판정의 국적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중재지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중재판정의 국적은 법적 효력의 근원이 된다. 온라인중재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은 일종의 통신방식이며, 현실에 존재하는 물리적 장소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중재가 특정 국가(중재지)의 법률제도 하에서 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중재판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중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재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온라인중재지 인정에 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중재원의 소재지를 중재지로 인정하거나 온라인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인시스템의 소재지를 중재지로 인정하자는 의견은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⁵⁹⁾ 대신, 분쟁과 가장 밀접한 장소를 중재지로 인정하자는 의견과⁶⁰⁾ 당사자 자치원칙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중재지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⁶¹⁾

57)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제2조 제2항.

58) 高蘭英, “網上仲裁的若干法律問題”, 「學術論壇」總第204期, 2008, p.145.

59) 馬遵(2009), p.110; 劉政, “推行網上仲裁的制約因素與路徑選擇”, 「海南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27卷 第3期, 2009, p.307.

60) 李娟(2008), p.5; 薄紅蓮, “從國際私法視角看網上仲裁的仲裁地確認問題”, 「寧波廣播電視大學學報」第6卷 第3期, 2008, p.63. 분쟁과 밀접에는 분쟁대상의 소재지, 당사자의 소재지, 영업지 소재지 등이 있다.

‘온라인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 자치원칙에 입각하여 합의에 의해 중재지를 결정할 수 있고, 만약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CIETAC의 소재지를 중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²⁾ 온라인에는 중국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지만, CIETAC의 소재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법률을 적용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3. 온라인중재판정과 집행

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문과 유사한 법적 강제력을 지닌다. 이 때문에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서면으로 중재판정문을 작성하여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기관이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³⁾ 온라인중재에서 이러한 요구는 전자서명 혹은 전자날인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2005년부터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서명과 전자날인의 사용 자체는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⁶⁴⁾ 문제는 이렇게 작성된 중재판정문이 현행 ‘중재법’ 하에서는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적 형식의 ‘중재합의’는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거하여 법적효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전자적 형식의 ‘중재판정문’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중재규칙’에서도 중재판정문은 반드시 오프라인 중재와 같은 서면형식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⁶⁵⁾

온라인에서 작성된 중재판정의 법적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패소자가 판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법적수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중재법’ 또는 사법해석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온라인중재판정은 서면형식으로만 작성되어야 한다. 중재합의부터 중재판정서의 작성까지 온라인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온라인중재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된 중재판정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중재판정과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⁶⁶⁾ 이를 위해서 중국의 많은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중재법’의 개정안에서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된 중재판정문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⁶⁷⁾ 만약 중국 ‘중재법’의

61) 1985년 ‘모델법’ 제20조 제1항 “당사자는 자유롭게 중재지를 선택할 수 있다”를 인용한 것이다. 즉,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특정 국가를 중재지를 지정하면 바로 그 곳의 법률에 의해서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다. 朱雪利(2008), p.19; 이연(2008).

62) ‘온라인중재규칙’ 제8조.

63) ‘중재법’ 제54조.

64) 중국 ‘전자서명법’ 제3조: 민사활동 중의 계약 혹은 기타 문건, 증서 등의 문서에 대해 당사자는 전자서명과 데이터로 이루어진 전자문서 사용여부를 약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사용하기로 약정한 전자서명, 데이터로 이루어진 전자문서는 단지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65) ‘온라인중재규칙’ 제39조.

66) 일부에서는 중재판정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서면형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王中, “網上仲裁的法律障礙給其解決”, 「中國市場」 제31기, 2008, p.37.

67) 劉政(2009), p.306.

개정안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면 중국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국내중재는 크게 확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온라인중재를 도입하고 있지 않거나, 전자적 형식의 중재판정문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의 승인과 집행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을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중국의 온라인중재 운용현황을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를 중심으로 고찰해보았다.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12월 CIETAC이 도메인네임분쟁해결센터(DNDRC)를 설립하면서 부터이다. DNDRC의 분쟁해결절차는 신청부터 판정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성격이 조정보다는 중재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중국 온라인중재의 초기 모델로 볼 수 있다. DNDRC는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만을 다룬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CIETAC은 그 외의 인터넷관련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2005년에 온라인분쟁해결센터(ODRC)를 설립하였다. 이후 중국정부의 온라인중재의 제도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하에 2009년 CIETAC이 ‘온라인중재규칙’을 시행하게 되고, ODRC를 담당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분쟁해결이 대부분 중재기관이 아닌 온라인분쟁해결 서비스제공자가 개설한 전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그 형식도 대부분 조정에 집중되어 있고, 인터넷 혹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CIETAC은 중재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상사분쟁을 대상으로 온라인중재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연구 가치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중재규칙’을 분석한 결과, 중재신청, 통지, 중재판정부의 구성, 심리, 판정 등 전 과정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오프라인 중재에 비해 진행기한이 현저히 단축되어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적 형식의 중재합의와 중재판정문의 인정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적 형식의 중재합의의 경우, 중국 현행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외국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 집행거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섭외사건에서는 온라인중재를 선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재판정문의 경우, 전자식 형식으로 작성된 것은 중국 현행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재법’을 개정하거나 사법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온라인중재규칙’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실효성이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논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직 온라인중재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온라인중재 발전 동향을 주시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위에

서도 언급했지만 온라인중재의 시행에는 기술적,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면 한국적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온라인중재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우광명, “중국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실행과 법적 문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제6권 제2호, 2006.
- 우광명, “온라인 중재의 실행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제5권 제1호, 2003.
- 유병욱, “온라인분쟁해결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온라인중재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제19권, 2003.
- 오원석·유병욱, “사이버무역에서 중재의 역할과 온라인중재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제14권 제1호, 2004.
- 차경자, “중국의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제도-CIETAC의 DNDRC 조정을 중심으로”, 『국제상학』제23권 제4호, 2008,
- 최석범, “온라인 ADR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제18권 제3호, 2008.
- 盧雲華, 『在線仲裁研究(中國歐盟信息社會項目)』, 法律出版社, 2008.
- 周雪利, “網上仲裁若干法律問題之探討”, 『甘肅政法成人教育學院學報』總第70期, 2008.
- 朱瑋璟, “網上仲裁若干法律問題研究”, 『法學研究』第6期, 2009.
- 馬遷, “網上仲裁的法律問題研究”, 『河南社會科學』第17卷 第2期, 2009.
- 李娟, “試論網上仲裁的法律問題”, 『仲裁研究』第15輯, 2008.
- 吳清昊, “論在線仲裁”, 『北京仲裁』第61輯, 2007.
- 高蘭英, “網上仲裁的若干法律問題”, 『學術論壇』總第204期, 2008.
- 劉政, “推行網上仲裁的制約因素與路徑選擇”, 『海南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27卷 第3期, 2009.
- 薄紅蓮, “從國際私法視角看網上仲裁的仲裁地確認問題”, 『寧波廣播電視大學學報』第6卷 第3期, 2008.
- 王中, “網上仲裁的法律障礙給其解決”, 『中國市場』제31기, 2008.

ABSTRACT

Practices and Legal Issues of Online Arbitration in China - focused on Online Arbitration of CIETAC

Kyung-Ja Cha

Sung-Il Choi

Since the Arbitration Law of China took effect in 1995, arbitration has grown with the economy. At the end of 2009, there were 202 arbitration institutions in China. Among them,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CIETAC) has adopted online arbitration and has settled internet domain name disputes since 2001. CIETAC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er(DNDRC) has accumulated abundant experiences of online arbitration in the field of domain name disputes. Based on those experiences, on 1 May 2009, CIETAC implemented the CIETAC Online Arbitration Rules(Rules') to regulate the resolution of e-business disputes as well as other business disputes.

With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aims to study the status quo, practices and issues of online arbitration conducted by CIETAC. For the purpose of the article, a general picture of online arbitration is outlined first, followed by introducing the steps of the online arbitration procedure. According to the 'Rules', the entire arbitration process is conducted using online communication methods which are cost-effective and efficient.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online arbitration, legal barriers need to be removed. This article considers main legal issues of online arbitration in China and proposes amendment to Chinese Arbitration Law, in particular, the recognition of the validity of electronic arbitration agreements and awards.

Key Words : Online Arbitration, China, CIETAC, Online Arbitration Rule